

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안내

[분양가 예시]

아파트 공급금액	발코니확장 공급금액	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	합계
427,500,000	20,000,000	10,000,000	457,500,000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(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(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)
	주소(법인소재지) (당첨자 본인 등본상 주소)	(휴대)전화번호 (당첨자 본인 연락처 기재)

① 자금조달계획	자기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(본인명의로 예금(적금 등) 원	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(본인명의로의 주식, 채권 및 각종유가증권매각금 등) 원	
		④ 증여·상속등 (가족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) [] 부부 [] 직계존비속 (관계:부, 모, 자녀 등) [] 그 밖의 관계 (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)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(보유현금+그밖의 자산금액) 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 (종류:금융상품, 펀드/보험 등)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(타부동산 매도액, 기존보증(전세금), 중전부동산권리거래 등 본인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) 원		⑦ 소계 (②,③,④,⑤,⑥ 항목의 총 금액) 원	
	차입금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	⑨ 주택담보대출 (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계획 자금)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등 (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 등, 상한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원	
		⑩ 그 밖의 대출 (가, 미보유 [] 보유 (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 분양권, 입주권 포함 건) (가족, 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황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 원		⑪ 그 밖의 차입금 (가, 미보유 [] 보유 (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 분양권, 입주권 포함 건) (가족, 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황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 원	
		⑪ 그 밖의 차입금 (가족, 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황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 원 [] 부부 [] 직계존비속 (관계:부, 모, 자녀 등) [] 그 밖의 관계 (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)		⑫ 소계 (⑧⑨⑩⑪ 항목의 총 금액) 원	
	⑬ 합계		아파트 공급금액 + 발코니확장 금액 + 추가선택품목 금액 = 총 거래금액 (예시_457,500,000원)		

⑭ 조달자금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457,500,000원
	⑮ 계좌이체 금액	(중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)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해당사항 없음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해당사항 없음
	지급 사유 ()	

⑱ 입주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 (본인 또는 가족입주 체크 및 모집공고 상 입주예정일 기재)	[] 임대(전·월세) (⑨ 항목 기재 시 필수 체크)	[] 그 밖의 경우(재건축 등) (해당사항 없음)
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(작성 금지) 년 (작성 금지) 월 (작성 금지) 일

제출인 (계약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)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"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" 를 제출해야 함.

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참고사항

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 참고사항

- ※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등 신고 의무화 및 제출대상지역으로 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.
- ※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대량 신고하여 계약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바라며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거짓 작성 또는 미 제출시 「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거래신고필증 미발급 및 추후 신고필증미지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아래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대한 계약자의 주택취득자금조달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※ 단, 향후 법 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항목		상세항목	세부내용
자기자금	② 금융기관예금액	예금(적금) 등	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
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
	④ 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⑤ 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중전부동산 권리가액		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	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⑨ 임대보증금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√ 체크, 보유란에 √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선정하여 기재)
	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⑩ 회사지원금·사채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
입주계획	⑪ 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
	⑬ 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⑭ 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입주계획	⑮ 현금 등 기타자금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 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그 밖의 경우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	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제출대상인 경우) 첨부서류를 포함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, 자세한 사항은 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